

의안번호	제336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3년 7월 6일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36
----------	-----

제출연월일 : 2023년 7월 6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기부채납은 삼성전자의 50억원 후원금을 유치하여 시설 및 위탁가정의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만 18~24세)이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주거, 교육, 상담 등)하는 센터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 道↔삼성전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충북아동복지협회간 협약을 체결하여 충북아동복지협회에서 도유지에 센터 건립 후 도재산으로 기부채납할 계획이며, 기부채납 규모는 사업비 42억원, 지상 5층, 건축 연면적 1,400㎡ 임
- 후생복지관 신축은 도청사 주차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노후되고 협소한 구내식당을 개선하고자 신관 뒤편 부지에 기존 차고동 건물을 철거하여 후생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신축 규모는 사업비 447억원, 지하 2층, 지상 6층, 건축 연면적 13,961.41㎡ 임
-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부지 매각은 국가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자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 매각 규모는 1필지, 51,800㎡이며,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대금을 산정하여 LG에너지솔루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기부채납》

일반회계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2-2번지
※ 오창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부지(3,830㎡) 중 일부 활용
- 사업기간 : 2023. ~ 2024.
-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1,400㎡(지상 5층) * 부지 300㎡
 - 지상5층(생활·체험실 25실, 사무공간, 상담실 등)
- 사업비 : 42억원(설계비, 건축비, 기자재 구입비 등)
- 취득방법 : 기부채납
 - 기부자 : 충북아동복지협회 (대표 권현숙)
 - 기부시점 : 준공과 동시에 기부 (2024. 3월 예정)

《후생복지관 신축》

일반회계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3. 9. ~ 2025. 12.
-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13,961.41㎡(지하2, 지상6) * 부지 2,296.6㎡
 - 지하2층 ~ 지상4층(12,462.43㎡) : 주차장 350대(옥외 10대 포함)
 - 지상5층 ~ 지상6층(1,498.98㎡) : 북카페, 체력단련실, 휴게시설 등
- 사업비 : 447억원(공사비, 용역비, 예비비 등)
 - 공사비 : 351.3억원(건축, 전기, 기계, 통신, 소방, 토목, 조경)
 - 용역비 : 52억원(측량, 설계, 건설사업관리, 철거 등)
 - 예비비 : 43억원(예비비)
 - 기타비 : 0.7억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 계약방법 : 공개입찰

□ 재산의 처분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부지 매각》

일반회계

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매수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653-14번지	공장 용지	51,800㎡	15,462,300천원 (공시가 298,500원/㎡)	(주)엘지에너지 솔루션

- 소 유 자 : 공유지분 (산업부 3/4, 도 1/4)
- 매각시기 : '23. 8월~
- 매각방법 : 수의계약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의3)
- 매 각 액 :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

3.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건물	2개동	15,361.41	48,900,000				
	기타							
1	토지							
	건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2-2	1,400	4,200,000	'24. 3.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기부채납	충북아동 복지협회	기부 채납
	기타							
2	토지							
	건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5	13,961.41	44,700,000	'25. 12.	후생복지관 건립		신축
	기타							
3	토지	이하여백						
	건물							
	기타							

관계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p> <p>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